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716

2024. 10. 18.(금)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충청북도교육감

나. 발의일자: 2024년 10월 2일

다. 회부일자: 2024년 10월 2일

라. 상정일자: 2024년 10월 11일

(제4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국장 서성범)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사항 반영

○ 직속기관 등의 사용대상자를 확대하여 휴양시설의 활성화 도모

○ 각 기관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는 운영을 위하여 조례 개정

나. 주요내용

❑ **타 조례 개정 사항 반영**

❍ **사용료 징수 기관 변경 사항 반영(안 제6조제2항)**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20. 11. 6.자 개정 반영
- 충청북도교육문화원(삭제) → 충청북도학생수련원(신설)

❑ **직속기관 사용 대상자의 사용료 관련 조항 개정(안 별표3, 별표4의2, 별표4)**

❍ **직속기관의 사용료 징수금액 변경 및 사용 대상자 명문화**

- (해양교육원, 학생수련원) 생활실(관) 학생 1,000원 → 무료
- 교직원 범위에 퇴직 교직원(퇴직 교직원 가족 포함)을 추가하여 사용료를 현직 교직원과 동일하게 변경(기타에 규정한 퇴직 교직원은 삭제)

❑ **기관·시설의 표기명 현행화(안 별표4의2. 안 별표4의3)**

❍ **기관·시설 표기명을 별표 사용구분 및 현행 조례에 따라 현행화**

- 해양교육원(제주) → 해양교육원(제주분원)
- 강당 → 다목적실, 세미나실로 분류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원호)

가. 조례 제안이유 검토

❍ 본 개정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사항을 현행화하고, 사용료 변경 및 사용 대상자 확대 등을 통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도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검토

○ 주요 내용으로는 소관 기관 변경 1건, 사용료 변경 1건, 사용 대상자 확대 1건, 일부 미비 사항 변경 3건 임

○ 안 제4조는 충청북도학생수련원 및 충청북도해양교육원 학생 생활관 사용료 1천원을 무료로 개정한 것으로,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조치며 학생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됨

○ 안 제6조제2항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사용료 징수 기관을 변경한 것이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안 제1조부터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 제11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 등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입법 체계나 형식에 있어서도 타당성이 인정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 조치, 학생 및 교직원의 복지 증진 등에 대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 취지 및 필요성, 타당성이 인정되며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20. 11.에 개정되어 학생수영장의 관할 기관이 변경되었음에도 4년이 지난 시점에 개정안으로 제출된 바, 사업 부서에서는 상위법령,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입법 조치를 통하여 교육정책 및 사업 운영이 필요함

○ 또한, 제천학생회관 실외 수영장은 2020년 제천교육지원청과 제천학생회관 상호 이전 재배치로 2019년부터 미운영되고, 제천교육지원청 청사 증축에 따라 2025. 1.부터 철거 예정임에도 본 조례 개정안에

는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 론 요 지: “생 략”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5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를 “제156조의 위임에 따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 중 “대해서 적용한다”를 “적용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타”를 “다른”으로, “교직원에 대하여”를 “교직원에게”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직속기관 분관 도서관 및 교육지원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① 직속기관의 사용료 징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북도교육도서관: 별표 1
2. 충청북도교육문화원: 별표 2
3. 충청북도학생수련원: 별표 3
4.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 별표 4
5. 충청북도해양교육원: 별표 4의2, 별표 4의3

제5조제1항 중 “사람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충청북도교육문화원”을 “충청북도학생수련원”으로, “50퍼센트를”을 “5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된다”로 한다.

제1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별표 3, 별표 4의2, 별표 4의3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사용료 징수금액(제4조제1항 관련)

기관명	사용구분		징수액	비 고
충청북도 학생수련원	운동장	학생	무료	○ 1일기준(단체) ○ 100명 초과시 초과하는 50명당 30,000원씩 가산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무료	
		기타	50,000원	
	강당	학생	무료	○ 1일 기준 ○ 냉·난방에 소요된 연료 및 전기사용 요금은 별도 징수함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무료	
		기타	50,000원	
	연수실	학생	무료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무료	
		기타	50,000원	
	개인텐트설치	학생	무료	○ 1동 1박 기준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무료	
		기타	10,000원	
	생활실	학생	무료	○ 학생은 1인 1박 기준 ○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과 기타는 1실 1박 기준 ○ 현장체험학습 인솔자(지도자) 무료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20,000원	
		기타	30,000원	
	글램핑텐트	학생	무료	○ 1동 1박 기준 ○ 현장체험학습 인솔자(지도자) 무료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10,000원	
		기타	15,000원	
	안전체험관	학생	무료	○ 제천안전체험관 ○ 옥천안전체험장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무료	
		기타	무료	

기관명	사 용 구 분			징 수 액	비 고
충청북도 학생수련원	수영장 (경영풀장)	일일입장	초등학생이하	1,500원	○ 사용료는 1인 기준임 ○ 초등학생이하: 13세 미만 ○ 중·고등학생: 13세 이상 19세 미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자 ○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자 ○ 강습료는 월 회비에 10,000원을 추가 (스킨스쿠버 제외) ○ 단체는 15인 이상 적용 ○ 다이빙장은 지도강사 입회시 사용 가능 ○ 스킨스쿠버용 압축공기통 사용시 1개당 7,000원 추가
			중·고등학생	2,000원	
			일반인	3,000원	
		월회원	초등학생이하	30,000원	
			중·고등학생	35,000원	
			일반인	50,000원	
		단체입장	초등학생이하	1,000원	
			중·고등학생	1,500원	
			일반인	2,500원	
	수영장 (다이빙장)	일일입장	스킨스쿠버	10,000원	
			초등학생이하	2,500원	
			중·고등학생	3,000원	
			일반인	4,000원	
		월회원	스킨스쿠버	170,000원	
			초등학생이하	50,000원	
			중·고등학생	55,000원	
			일반인	70,000원	
		단체입장	스킨스쿠버	7,000원	
			초등학생이하	2,000원	
			중·고등학생	2,500원	
			일반인	3,500원	
	수영장 (전용)	경영풀장(시간당)		200,000원	○ 공휴일 및 야간사용(동계 17:00이후 하계 18:00이후)시 시간당 30퍼센트 가산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다이빙장(시간당)		100,000원	
		개인사물함(월)		3,000원	○ 월회비 3월이상 선납자는 해당기간 면제
휴양시설	객실 사용료	4~6인실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20,000원	○ 1실 1박 기준금액임
			기타	30,000원	
		10인실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30,000원	
			기타	40,000원	
	시설 사용료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무료	○ 1일 기준 ○ 100명 초과 시 초과하는 50명당 30,000원씩 가산 ○ 냉·난방에 소요된 연료 및 전기 사용요금은 별도 징수함 * 다목적강당 및 회의실, 세미나실, 분임토의실
			기타	50,000원	

1. 학생의 범위는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학교장이 신청하고 충청북도학생수련원장이 허가한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으로 함
2. 교직원의 범위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기관,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른 유치원의 재직 또는 퇴직 교직원으로 함
3. 법인으로 등록된 청소년단체에서 충청북도 내 각급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활동은 제1호에 준함
4. 기타는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용대상으로 함

[별표 4의2]

충청북도해양교육원(보령) 사용료 징수금액(제4조제1항 관련)

<table>
<tr><th rowspan="2">기관명</th><th rowspan="2" colspan="2">사용구분</th><th colspan="3">징 수 액</th><th rowspan="2">비 고</th></tr>
<tr><th>학생</th><th>교직원 및
교직원가족</th><th>기타</th></tr>
<tr><td rowspan="4">충청북도
해양교육원
(보령)</td><td colspan="2">생활관</td><td>무료</td><td>20,000원
(30,000원)</td><td>30,000원
(40,000원)</td><td rowspan="2">○ 학생은 1인 1박 기준
○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과 기타는 1실 1박 기준
○ ( )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적용금액
○ 수련활동 인솔교사는 무료</td></tr>
<tr><td>교직원 콘도</td><td>5인실</td><td>-</td><td>20,000원
(30,000원)</td><td>30,000원
(40,000원)</td></tr>
<tr><td colspan="2">다목적실</td><td>무료</td><td>무료</td><td>50,000원</td><td rowspan="2">○ 1일 기준
○ 냉·난방에 소요된 연료 및 전기사용 요금은 별도 징수함</td></tr>
<tr><td colspan="2">세미나실</td><td>무료</td><td>무료</td><td>50,000원</td></tr>
</table>

1. 학생의 범위는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학교장이 신청하고 충청북도해양교육원장이 허가한 현장체험 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으로 함
2. 교직원의 범위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기관,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른 유치원의 재직 또는 퇴직 교직원으로 함
3. 법인으로 등록된 청소년단체에서 충청북도 내 각급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 활동은 제1호에 준함
4. 기타는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용대상으로 함

[별표 4의3]

충청북도해양교육원(제주분원) 사용료 징수금액(제4조제1항 관련)

기관명	사용구분		징수액			비고
			학생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기타	
충청북도 해양교육원 (제주)	생활관		무료	20,000원 (30,000원)	30,000원 (40,000원)	○ 학생은 1인 1박 기준 ○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과 기타는 1실 1박 기준 ○ ( )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적용금액 ○ 체험활동 인솔교사는 무료
	교직원 콘도	4~6 인실	-	20,000원 (30,000원)	30,000원 (40,000원)	
		10 인실	-	30,000원 (40,000원)	40,000원 (50,000원)	
	다목적실		무료	무료	50,000원	○ 1일 기준 ○ 냉·난방에 소요된 연료 및 전기사용 요금은 별도 징수함
	세미나실		무료	무료	50,000원	

1. 학생의 범위는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학교장이 신청하고 충청북도해양교육원장이 허가한 현장체험 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으로 함
2. 교직원의 범위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기관,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른 유치원의 재직 또는 퇴직 교직원으로 함
3. 법인으로 등록된 청소년단체에서 충청북도 내 각급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 활동은 제1호에 준함
4. 기타는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용대상으로 함

[별표 5]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 사용료 징수금액(제4조제2항 관련)

기 관 명	구 분			징 수 액	비 고
보은교육도서관 옥천교육도서관 영동교육도서관 진천교육도서관 괴산교육도서관 증평교육도서관 음성교육도서관 금왕교육도서관 단양교육도서관	복 사 료		A3-B4	40원	1매당
			A4-B5	30원	〃
	인 쇄 료 (디지털자료실)	흑 백	A3-B4	80원	1매당
			A4-B5	50원	〃
		칼 라	A4-B5	500원	〃
	시설사용료 (회의실, 전시실 등)			20,000원	1일기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시설·설비 등의 사용료 징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56조의 위임에 따라 ---------- 필요한 ----------.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충청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이하 “직속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적용한다.
제3조(사용대상) ① (생 략)	제3조(사용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직속기관 등은 수련·휴양시설 공동사용을 위해 타 시·도 교육감과 협약 체결된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 다른 ---------- 교직원에게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사용료 징수금액) ① 충청북도교육도서관, 충청북도교육	제4조(사용료 징수금액) ① 직속기관의 사용료 징수금액은 다음

문화원,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 충청북도해양교육원의 사용료 징수금액은 각각 별표 1에서 별표 4의3과 같다.	각 호와 같다. 1. 충청북도교육도서관: 별표 1 2. 충청북도교육문화원: 별표 2 3. 충청북도학생수련원: 별표 3 4.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 별표 4 5. 충청북도해양교육원: 별표 4의2, 별표 4의3
② 직속기관 분관 도서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 제천학생회관의 사용료 징수금액은 각각 별표 5, 별표 6과 같다.	② 교육지원청 ----------.
제5조(실비 징수) ① 직속기관 등의 장은 학생교육활동, 교직원 연수 및 교육훈련, 평생교육, 각종 행사 등으로 해당 기관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숙박비, 식비, 교재비, 재료비, 연료비 등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실비 징수) ① ---------- 사람에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액) ① (생 략)	제6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액) ① (현행과 같음)
② 직속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충청북도교육문화원, 충청	② ---------- 충청북도학생수련원----------

북도중원교육문화원 및 제천학생회관 수영장의 사용료를 50퍼센트를 감액하여 징수한다.	---------- 50퍼센트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인 경우 돌봄인 1명	5. ---------- 따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8조(시설·설비 등의 사용절차 등) ① (생 략)	제8조(시설·설비 등의 사용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직속기관 등의 운영 및 시설·설비 등의 사용신청 및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 필요한 ----------.
제10조(권리양도 등 금지) 직속기관 등의 시설·설비 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속기관 등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10조(권리양도 등 금지) ----------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 필요한 ----------.

현 행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사용료 징수금액[별표3]

기관명	사용구분		징수액	비 고
충청북도 학생 수련원	운동장	학생	무료	○ 1일기준(단체) ○ 100명 초과시 초과하는 50명당 30,000원씩 가산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무료	
		기타	50,000원	
	강당	학생	무료	○ 1일 기준 ○ 냉난방에 소요된 연료 및 전기사용 요금은 별도 징수함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무료	
		기타	50,000원	
	연수실	학생	무료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무료	
		기타	50,000원	
	개인 텐트 설치	학생	무료	○ 1동 1박 기준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무료	
		기타	10,000원	
	생활실	학생	1,000원	○ 학생은 1인 1박 기준 ○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과 기타는 1실 1박 기준 ○ 현장체험학습 인솔자(지도자)무료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20,000원	
		기타	30,000원	
	글램핑 텐트	학생	무료	○ 1동 1박 기준 ○ 현장체험학습 인솔자(지도자) 무료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10,000원	
		기타	15,000원	
	안전 체험관	학생	무료	○ 제천안전체험관 ○ 옥천안전체험장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무료	
		기타	무료	

1. 학생의 범위는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학교장이 신청하고 충청북도학생수련원장이 허가한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으로 함.
2. 교직원의 범위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기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른 학교 및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으로 함.
3. 법인으로 등록된 청소년단체에서 충청북도 내 각급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 활동은 제1호에 준함.
4. 기타는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용대상과 퇴직 교직원으로 함

개 정 안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사용료 징수금액[별표3]

기관명	사용구분		징수액	비 고
충청북도 학생 수련원	운동장	학생	무료	○ 1일기준(단체) ○ 100명 초과시 초과하는 50명당 30,000원씩 가산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무료	
		기타	50,000원	
	강당	학생	무료	○ 1일 기준 ○ 냉난방에 소요된 연료 및 전기사용 요금은 별도 징수함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무료	
		기타	50,000원	
	연수실	학생	무료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무료	
		기타	50,000원	
	개인 텐트 설치	학생	무료	○ 1동 1박 기준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무료	
		기타	10,000원	
	생활실	학생	무료	○ 학생은 1인 1박 기준 ○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과 기타는 1실 1박 기준 ○ 현장체험학습 인솔자(지도자)무료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20,000원	
		기타	30,000원	
	글램핑 텐트	학생	무료	○ 1동 1박 기준 ○ 현장체험학습 인솔자(지도자) 무료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10,000원	
		기타	15,000원	
	안전 체험관	학생	무료	○ 제천안전체험관 ○ 옥천안전체험장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무료	
		기타	무료	

1. 학생의 범위는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학교장이 신청하고 충청북도학생수련원장이 허가한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으로 함.
2. 교직원의 범위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기관,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른 유치원의 재직 또는 퇴직 교직원으로 함.
3. 법인으로 등록된 청소년단체에서 충청북도 내 각급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 활동은 제1호에 준함.
4. 기타는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용대상으로 함.

현 행

충청북도해양교육원(보령)사용료 징수금액

[별표4-2]

기관명	사용구분	징수액			비고
		학생	교직원 및 교직원 가족	기타	
충청북도 해양교육원 (보령)	생활관	1,000원	20,000원 (30,000원)	30,000원 (40,000원)	○ 학생은 1인 1박 기준 ○ 교직원 및 교직원 가족과 기타는 1실 1박 기준 ○ ( )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적용금액 ○ 수련활동 인솔교사는 무료
	교직원 콘도 5인실	-	20,000원 (30,000원)	30,000원 (40,000원)	
	강당	무료	무료	50,000원	○ 1일 기준 ○ 냉난방에 소요된 연료 및 전기사용 요금은 별도 징수함

1. 학생의 범위는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학교장이 신청하고 충청북도해양교육원장이 허가한 현장체험 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으로 함.
2. 교직원의 범위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기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른 학교 및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으로 함.
3. 법인으로 등록된 청소년단체에서 충청북도 내 각급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 활동은 제1호에 준함.
4. 기타는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용대상과 퇴직 교직원으로 함.

개 정 안

충청북도해양교육원(보령)사용료 징수금액

[별표4-2]

기관명	사용구분	징수액			비고
		학생	교직원 및 교직원 가족	기타	
충청북도 해양교육원 (보령)	생활관	무료	20,000원 (30,000원)	30,000원 (40,000원)	○ 학생은 1인 1박 기준 ○ 교직원 및 교직원 가족과 기타는 1실 1박 기준 ○ ( )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적용금액 ○ 수련활동 인솔교사는 무료
	교직원 콘도 5인실	-	20,000원 (30,000원)	30,000원 (40,000원)	
	다목적실	무료	무료	50,000원	○ 1일 기준 ○ 냉난방에 소요된 연료 및 전기사용 요금은 별도 징수함
	세미나실	무료	무료	50,000원	

1. 학생의 범위는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학교장이 신청하고 충청북도해양교육원장이 허가한 현장체험 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으로 함.
2. 교직원의 범위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기관,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른 유치원의 재직 또는 퇴직 교직원으로 함.
3. 법인으로 등록된 청소년단체에서 충청북도 내 각급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 활동은 제1호에 준함.
4. 기타는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용대상으로 함.

현 행

충청북도해양교육원(제주) 사용료 징수금액 [별표4-3]

기관명	사용구분		징수액			비고
			학생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기타	
충청북도 해양교육원 (제주)	생활관		1,000원	20,000원 (30,000원)	30,000원 (40,000원)	○ 학생은 1인 1박 기준 ○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과 기타는 1실 1박 기준 ○ ( )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적용금액 ○ 체험활동 인솔교사는 무료
	교직원 콘도	4~6인실	-	20,000원 (30,000원)	30,000원 (40,000원)	
		10인실	-	30,000원 (40,000원)	40,000원 (50,000원)	
	다목적실		무료	무료	50,000원	○ 1일 기준 ○ 냉난방에 소요된 연료 및 전기사용 요금은 별도 징수함
	세미나실		무료	무료	50,000원	

1. 학생의 범위는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학교장이 신청하고 충청북도해양교육원장이 허가한 현장체험 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으로 함.
2. 교직원의 범위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기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른 학교 및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으로 함.
3. 법인으로 등록된 청소년단체에서 충청북도 내 각급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 활동은 제1호에 준함.
4. 기타는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용대상과 퇴직 교직원으로 함.

개 정 안

충청북도해양교육원(제주분원) 사용료 징수금액 [별표4-3]

기관명	사용구분		징수액			비고
			학생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기타	
충청북도 해양교육원 (제주)	생활관		무료	20,000원 (30,000원)	30,000원 (40,000원)	○ 학생은 1인 1박 기준 ○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기타는 1실 1박 기준 ○ ( )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적용금액 ○ 체험활동 인솔교사는 무료
	교직원 콘도	4~6인실	-	20,000원 (30,000원)	30,000원 (40,000원)	
		10인실	-	30,000원 (40,000원)	40,000원 (50,000원)	
	다목적실		무료	무료	50,000원	○ 1일 기준 ○ 냉·난방에 소요된 연료 및 전기사용 요금은 별도 징수함
	세미나실		무료	무료	50,000원	

1. 학생의 범위는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학교장이 신청하고 충청북도해양교육원장이 허가한 현장체험 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으로 함.
2. 교직원의 범위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기관,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른 유치원의 재직 또는 퇴직 교직원으로 함.
3. 법인으로 등록된 청소년단체에서 충청북도 내 각급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 활동은 제1호에 준함.
4. 기타는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용대상으로 함.

현 행

직속기관 분관 도서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 사용료 징수금액[별표5]

기관명	구 분			징수액	비고
미원교육도서관 중원교육도서관 보은교육도서관 옥천교육도서관 영동교육도서관 진천교육도서관 괴산교육도서관 증평교육도서관 음성교육도서관 금왕교육도서관 단양교육도서관	복사료		A3-B4	40원	1매당
			A4-B5	30원	〃
	인쇄료 (디지털 자료실)	흑백	A3-B4	80원	1매당
			A4-B5	50원	〃
		칼라	A4-B5	500원	〃
	시설사용료 (회의실, 전시실 등)			20,000원	1일기준

개 정 안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 사용료 징수금액[별표5]

기관명	구 분			징수액	비고
보은교육도서관 옥천교육도서관 영동교육도서관 진천교육도서관 괴산교육도서관 증평교육도서관 음성교육도서관 금왕교육도서관 단양교육도서관	복사료		A3-B4	40원	1매당
			A4-B5	30원	〃
	인쇄료 (디지털 자료실)	흑백	A3-B4	80원	1매당
			A4-B5	50원	〃
		칼라	A4-B5	500원	〃
	시설사용료 (회의실, 전시실 등)			20,000원	1일 기준

관계법령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9조(업무) 문화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청소년들의 품성함양과 창의성 제고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기획·운영
2. 교육문화 축제, 각종 문예활동 및 공연·전시 운영
3. 삭제 <2017.7.28.>
4. 삭제 <2019.2.8.>
5. **삭제 <2020.11.6.>**
6. 교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05.7.1., 2008.6.13., 2014.5.2., 2016.7.29., 2017.7.28., 2019.2.8., 2020.11.6.>

제22조(업무) 수련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03.6.5., 2014.5.2., 2016.7.29., 2019.2.8., 2020.11.6.>

1. 학생들의 수련활동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단체의 야영과 수련활동
3. 교직원 연수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학생안전체험에 관한 사항
5. **학생수영장 운영**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련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직속기관 사용료 징수금액을 변경하고 사용 대상자를 명문화하는 것은 휴양시설의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므로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에 해당됨

4. 작성자: 행정국 재정복지과장 박종한